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평가관리지침

< 2025. 4. 30.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 “RISE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앙RISE센터”란 RISE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성과관리·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산라이즈혁신원(이하 ‘혁신원’ 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RISE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이하 ‘대학’ 이라 한다)

- 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6. “사업수행 주체”란 RISE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대학과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단,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원활한 사업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업 평가·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사전에 공고를 통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성과관리위원회) ①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이하 ‘혁신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혁신원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시장과 사전협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과를 부산라이즈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학계, 교육계, 경제·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성과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성과 관리·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2. 평가결과 또는 제재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3. 그 밖에 평가·관리를 위하여 시장 및 혁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 ① 혁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1. 선정평가
- 2.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 3. 그 밖에 시장 및 혁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혁신원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중앙RISE센터에서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위원 명단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평가위원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구성과 규모를 달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혁신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⑥ 혁신원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시장과 사전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부산라이즈위원회에게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1. 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제재를 받은 자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제7조(자문위원회) ① 혁신원장은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대학, 협의체 또는 사업단은 혁신원장에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혁신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제5조의 평가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수당) ① 성과관리위원회,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시간 지속되는 평가, 통상적인 분량 초과, 불가항력적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방식 전환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혁신원장 이상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액 상향이 가능하다.

제3장 지원 대상의 선정

제9조(사업공고) ①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3.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및 절차, 일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30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신청) 사업수행 주체가 되고자 하는 대학은 시장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① 혁신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선정평가와 관련한 세부 운영 계획은 혁신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혁신원장은 평가를 완료한 후 선정평가 결과를 부산라이즈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① 혁신원장은 부산라이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혁신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혁신원장은 정책상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혁신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혁신원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평가로 결정 시 재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13조(협약의 준비) ①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은 혁신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② 혁신원장은 평가위원회 등에서 사업계획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혁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혁신원장은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업적 관계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RISE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사업 협약은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④ 대학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혁신원장은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다.
- ⑤ 사업 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따르며, 세부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2. 중앙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중간·종합평가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시장 또는 혁신원장이 사업수행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혁신원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학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대학 또는 사업단이 허위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
- 3. 사업비 유용·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또는 사업단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
- 4. 시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또는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부도·법정관리·폐업·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원대상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방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협약이 해지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혁신원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⑥ 혁신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⑦ 시장은 혁신원장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사업비를 다른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지급)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등을 따른다.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제18조(수시점검)** ① 혁신원장은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혁신원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주체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혁신원장은 수시점검 결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수행 주체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혁신원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혁신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자체평가)** ①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수행 주체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수행 주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혁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혁신원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연차평가)** ① 혁신원장은 사업수행 주체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혁신원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부산라이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사업수행 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사업수행 주체는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계획을 토대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혁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혁신원장은 평가 결과를 부산라이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중간평가) ① 혁신원장은 사업종료 전에도 사업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중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종합평가) ① 혁신원장은 사업 종료연도의 사업기간이나 사업 종료 이후 시점에서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 사업수행 주체의 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연차평가·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혁신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혁신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혁신원장은 부산라이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연차평가·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컨설팅 실시,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지,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수행 주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하거나 혁신원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혁신원장은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사업 수행 주체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5조(보고의무) 사업수행 주체의 장은 시장 또는 혁신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현황, 사업단의 구성 현황, 사업비 집행 현황, 사업 추진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성과분석) 각종 컨설팅 및 평가 결과, 사업 운영 실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라이즈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 특례) 이 지침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혁신원장이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RISE 사업 종료시점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RISE 사업 협약서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약서 (부산라이즈혁신원과 대학의 협약용)

- 사업명(유형명) :
- 대학명 :
- 사업단(팀)명 :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시) 다년도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사업비 :
- 협약 당사자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
00대학교 총장
00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대학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부산광역시 RISE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계획) 부산광역시 RISE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0월 0일부터 다음연도 0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① 협약기간은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의 수행)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RISE사업단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은 00대학교 총장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 등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 시기 및 방식은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 00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지원 조건)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목표)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사업 신청 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및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이 정한 지침·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은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은 00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수혜 제한)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출 및 보고의 의무)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00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운영규정’ 또는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이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 및 ‘관리운영 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장, 00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라이즈혁신원장

직 인

00 대학교 총장

직 인

대학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소속 : 00대학교 직급(위) : RISE사업단장 성명 : (인)

별첨 : 00년 00대학교 부산광역시 RISE 사업 계획서